

## ●외교부고시 제2026-7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 주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 이라 한다)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6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9일

외교부장관

###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 1. 대상국가·지역

-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 14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산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백-헤르멜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구),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푹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⑫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부지역(콜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5.22.~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 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 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4) 외교·안보업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 단, 전쟁 등 현지 정세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체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가항(최초허가)의 절차를 준용함.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 III. 행정사항

####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함.

#### 2.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